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「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

당사자	성명	(주)한강이앰피
	주소	경기 김포시 대곶면 을생로 103-16(대벽리 690-88)
품질인증 용도		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
처분내용		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(2023.3.8. ~2023.6.7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(건설산업과-5971, 2022.7.13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

당사자	성명	남양기업(주)
	주소	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옥매로 209
품질인증 용도		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mm
처분내용		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(2023.3.8. ~2023.6.7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(건설산업과-5965, 2022.7.13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

당사자	성명	우진환경개발(주)
	주소	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98
품질인증 용도		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
처분내용		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(2023.3.8. ~2023.6.7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(건설산업과-5310, 2022.6.22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